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1176 제출연월일: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5항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제2조(「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를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고"를 "통보하고"로, "보 고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를 "통보" 로 한다.

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제86조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 ③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	⑤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	
획 및 그 시행 결과를 <u>보고</u> 하게	<u>제출</u>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	
・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	
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	
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	
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	
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	
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	
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u>식품의약품안전</u>	<u>식품의약품안전</u>

② · ③ (생 략)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 ① (생략)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
 외한다)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
 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
 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 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 건강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 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생략)

<u> </u>
②·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u>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1)
토 H 쉬 그
<u>통보하고</u>
제출하
<u>여야</u>
③
<u>통보</u>
•
④ (현행과 같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생 략)	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	②
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ㆍ폐	
기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	
며, 그 회수·폐기 계획에 따른	
회수ㆍ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u>식품의</u>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	
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	
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	
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 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 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u>통보하여야 한다</u>